



#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 보험료 할증기준 체크해 보세요!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민원지원팀 -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최대 1년인 단기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재가입하는 경우 향후 1년 간의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하여 산출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에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의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 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이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할인·할증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꿀팁도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곧 만기가 되어 갱신보험료를 알아보니,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원 한도 내여서 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간 무사고였다가 물적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 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해외로 2년 간 파견 근무를 나가는데,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가도 될까요?

## □ 자동차사고가 났었다면, 보험료는 이것 때문에 올라요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라고 하는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중 '**사고의 내용(크기)**'의 경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급이 하나 올라갈 때 보험료는 약 7% 할증됩니다. **대인사고는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인원수나 보험금 지급 규모에 의한 할증은 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건당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사망사고나 1급 부상사고가 일어나면 4등급이 올라갑니다.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고,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갑니다.** 만약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간 사고가 누적되어 0.5점 물적사고가 2건이 되면 1점이 되어 1등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한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1등급이 올라갑니다.**

〈 사고 내용별 점수 산정방법 〉

구 분	사 고 내 용	점 수	
대 인 사 고	사망 사고		
	부 상 사 고	1급	건당 4점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 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 적 사 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초과 사고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이하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한편 보험료 할증요소 중 '**사고 건수**'의 경우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약 3% ~ 11%씩 할인됩니다. 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약 7% ~ 6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 보험료 할증기준 체크해보세요

이 외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있습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시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료가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되어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여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됩니다. 과실 50% 미만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의 내용과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등급 산정 시 제외되며,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할증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피해자라도 3년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할인 유예).

참고로, 보험회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기존 사고가 반영되어 적용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고처리 후 환입처리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이전에 환입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에 오래 머물 경우,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요건을 살펴보세요

장기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2천만원)'을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만약 멀리 해외로 유학 또는 출장을 가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시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소결

본 사례의 경우 대인과 자기 신체사고는 없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자동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사고 내용'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 요소가 있는 경우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 사고라 할지라도 할증되는 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전년도에는 3년간 무사고 등급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 건수 할증 기준 3년간 1건, 1년간 1건 등급을 적용받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2년 파견근무를 나갈 경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 자동차보험 갱신·유지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

#### ①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된 경우, '공동인수' 제도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대인II, 대물 2천만원 초과 등)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을 제한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여러 보험회사들이 사고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으로 가입이 성립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② 차박 하려고 시트를 개조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주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 구조의 변경이나 위험물 적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차박이 유행하면서 자동차 시트를 침대형으로 개조하거나 시트를 뺐다 붙였다 하도록 개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차량 개조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통지의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 보험료 할증기준 체크해보세요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③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아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 도중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전손처리를 하였다면 폐차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는 보상 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며, 보상처리하지 않은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의 규모와 환급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전손이 아니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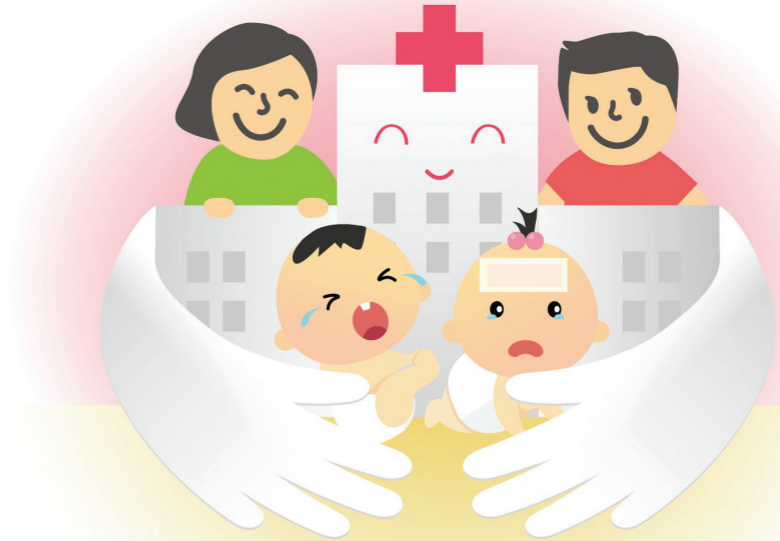
참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폐차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차(대체차량)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보험료 환급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된 적이 있는 담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 전손으로 인해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한 소멸하여 새 차량으로 이전시킬 수 없어 새로운 자차담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자차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고민하시거나 갱신보험료가 올랐을 때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제도, 공동인수제도 등 자동차보험 관련 다양한 제도들을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나도 모르게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가입지원

# 다태아 안심보험

20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서울 거주 다태아는 안심보험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어 골절, 화상, 암 진단비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가입방법** 출생과 동시에 자동 가입(보장기간 2년)

**보장내용** 응급실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암 진단비 등 최대 3,000만 원  
※ 자세한 보장내용은  (http://umppa.seoul.go.kr)에서 확인

**청구방법** 메리츠화재보험 웹사이트(https://mbi.seoul.insboon.com)에서 청구



서울 다태아 안심보험